

#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상반기(1차)

## 지원사업 모집공고

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### 1. 사업 내용

- (지원내용) 10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(지식재산)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 지원

| 구분           | 지원내용  |
|--------------|---|
| IP(지식재산)기술전략 | 유망기술도출, IP분쟁예방 전략, 강한 특허권 확보, 경쟁사 기술분석,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, R&D방향성 설정 등        |
| IP(지식재산)경영전략 | IP인프라/조직 구축, IP자산 구축, IP사업화 전략, IP브랜드/디자인 경영,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,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|

\*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

- (지원규모) 25,000천원 이내(정부지원금 15,000천원 이내)
  - 기업분담금 : 40% (현금 20%, 현물 20%)
    - \*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
    - \*\* 단,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(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), (예비)사회적 기업, 여성기업, 청년기업, 장애인 기업 의 경우 현금 15%(현물 25%)로 기업분담금 감면
- (최종결과물) : 특허출원 1건 및 IP(지식재산) 기술경영 융·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

### 2. 지원 대상

-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을 보유한 천안, 아산, 예산, 공주, 청양, 계룡, 부여, 논산, 금산 소재 중소기업
-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
  - \*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(공고일 기준 만 7년(신산업 창업 만 10년)을 초과하지 않은자)
  - \*\* 창업 및 업력 산정은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준용
  - \*\*\*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

### 3. 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2026년 2월 4일(수) ~ 2026년 3월 11일(수) 18시까지
- (신청방법)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(pms.ripcc.org)
- (지원센터 기준)
  - 본사(본점)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
  - 기업의 지사(지점)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(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)
  -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(본점)·지사(지점)·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
  - 법인기준 1사(법인)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
  - \*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
  - \*\* 본사 또는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
- (제출서류)

|  |   |
|--|---|
| <b>필수제출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자등록증 사본</li> <li>· 중소기업확인서</li> <li>· 창업기업확인서**</li> <li>· 사업추진(활용)계획서([붙임1] 양식)</li> </ul>  |
| <b>선택제출<br/>(해당기업만 제출)</b>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</li> <li>·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</li> <li>·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</li> </ul>   |
| <b>가점 증빙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</li> </ul>  |
| <b>현금부담금 감액증빙</b>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전년도 無매출기업) :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</li> <li>*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</li> <li>· (예비)사회적 기업, 청년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: 가점증빙 제출 서류</li> </ul>   |
| <b>지사(지점) 및<br/>기업부설연구소<br/>지역으로 신청시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통 : 사업자등록증</li> <li>· 지사(지점) :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</li> <li>· 기업부설연구소(전담부서) :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,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</li> </ul> |

\*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(유효기간 등 확인 必)

\*\*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

- (가점사항)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, 최대 6점까지 인정

\* 각 가점은 사업 공고 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(청년여부, 여성기업 등)

\*\*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('25년)은 IP제품혁신지원(~'24년이전), 특허기반사업화R&D사업('26년이후)에 해당

| 가점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장애인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인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| 2  |
| 여성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여성기업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청년창업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증 등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(예비)사회적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적·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            | 2  |
|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                    |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                 | 2  |
| 지역특화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           | 2  |
| IP디딤돌 수혜기업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서내 기재(제출서류 없음)            | 2  |
| KIPA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·아이디어 구매 기업 | 계약서, 협약서 등                  | 2  |
| K-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               | 관련 대회(행사) 출전·수상 확인서, 증빙문서 등 | 2  |
| 지식재산처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(한국발명진흥회)          | 해당사업 수혜이력<br>확인가능 문서(협약서 등) | 2  |
| 특허로 제품혁신지원사업(한국발명진흥회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IBK창공(IBK기업은행)                   | 연계사업 수수료증 및 선정 공문           | 2  |
|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              | 지원이력 증빙가능한 문서<br>(협약서 등)    | 2  |

#### 4. 선정절차

- (현장실사)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
  - \*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
  - \*\*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
- (1차 선정)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
- (2차 선정)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
  - \*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

#### 5. 사업수행절차

- (수행사 선정) 5배수 수행사 추천(컨설턴트) → 참여 수락(협력기관) → 수행사 선정(신청기업)
  - \*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, 제품·서비스,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,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
  - \*\*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
- (협약) 지역지식재산센터·수혜기업·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
- (컨설팅 수행)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
  - \*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,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
- (최종보고 및 평가)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

## 6. 문의처 및 관할지역

-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: 1661-1900
- 문의 : 충남지식재산센터 041-559-5743
- 관할지역 : 천안, 아산, 예산, 공주, 청양, 계룡, 부여, 논산, 금산 이상 9개 지자체  
소재 중소기업

\* 서산, 당진, 태안, 홍성, 보령, 서천 6개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은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신청  
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연락처: 041-663-0041

## 참고1

## 참고사항

### 신청 사이트 안내

(1)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(pms.ripc.org)을 통한 접수

- 기업회원 가입 필수

- 사업관리시스템은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

\* 공동인증서는 기업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에 한함

- [지원사업공고] → 센터별 [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2차 공고] → [지원사업신청]

\* 지역센터별 지원공고를 클릭하여 신청

- 신청절차



\* 제출서류 등록 후 최종 단계에서 “신청서 제출”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해당 접수건에 대한 진행상태를 반드시 확인(정상접수시 진행상태 “접수완료”로 표기됨)

### 필수동의사항

※ 아래는 사업 신청시 필수 동의 사항으로 항목별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동의 후 신청

(1)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(2)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용 / 지원 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·활용을 위한 동의

(3)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

(4) 기업 분담금 납부 동의

(5) 지원금 반납 서약서

### 기업진단 KIT

※ 기업 현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응답

### 유의사항

(1)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는 제출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심사(작성중인 경우 제외됨)

(2) 기업 소재지 및 관할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으로 신청

(3) 선정 후에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취소,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음

\* 지역 예산이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선정 후 지역이동 불가

## 신산업창업분야

(1)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는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
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① 인공지능   | ⑧ 스마트제조  | ⑮ 드론·개인이동수단 | ⑳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 |
| ② 빅데이터   | ⑨ 시스템반도체 | ⑯ 미래형 선박    | ㉑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|
| ③ 5G+    | ⑩ 자율주행차  | ⑰ 재난/안전     | ㉒ 우주               |
| ④ 블록체인   | ⑪ 전기수소차  | ⑱ 스마트시티     | ㉓ 차세대 원전           |
| ⑤ 서비스플랫폼 | ⑫ 바이오    | ⑲ 스마트홈      | ㉔ 양자               |
| ⑥ 실감형콘텐츠 | ⑬ 의료기기   | ㉚ 신재생에너지    | ㉕ 사이버 보안           |
| ⑦ 지능형 로봇 | ⑭ 기능성 식품 | ㉛ 이차전지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# 지역특화(주력)산업 가점

(1) 첨부지역별 특화(주력)사업 관련 KSIC코드를 입력

\* 참고파일 : [참고\_지역특화] 지역별\_주력산업\_참고용(개편후 KSIC코드)

\* 지역 주력산업이 개편되는 경우 개편된 산업을 적용

(2) 지역특화(주력)산업 수행관련한 사업현황 및 업종, 관련 KSIC 적합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컨설턴트가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가점 부여

| 지역 | 지역주력산업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|
| 서울 | 바이오·의료, 인공지능, 로봇, 핀테크, 창조산업, 첨단제조, 양자기술  |
| 경기 | 반도체, 로봇, 의료, 영상정보기술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 | 바이오, 로봇, 항공, 미래차, 반도체, 디지털/데이터           |
| 강원 | 천연물바이오소재, 세라믹원료·소재, 디지털헬스케어              |
| 경남 | 첨단정밀기계, 첨단항공부품, 항노화메디컬                   |
| 경북 | 신소재가공, 첨단디지털부품, 라이프케어소재                  |
| 광주 | 모빌리티 의장·전장 부품산업, 스마트홈 부품산업, 생체의료 소재·부품산업 |
| 대구 | 전기·자율 모빌리티부품, 기계요소소재부품, 디지털 의료기기         |
| 대전 | 정밀의료바이오헬스, 물류·국방서비스로봇, 나노반도체,            |
| 부산 | 초정밀소재부품,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, 실버케어테크          |
| 세종 |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, 기능성 바이오 소재                  |
| 울산 | 전기자동차부품, 가스연료선박기자재, 기능성화학소재              |
| 전남 | 환경·에너지소재부품, 친환경에너지설비·기자재, 자연유래헬스케어제품     |
| 전북 | 농생명바이오,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, 탄소융복합소재            |
| 제주 | 지능형관광서비스, 청정바이오, 그린에너지솔루션                |
| 충남 | 디스플레이 부품·장비산업, 탄소저감자동차부품산업, 고기능성그린바이오산업  |
| 충북 | 첨단반도체, 융합바이오,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               |

##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

- (1) 기업의 지사(지점),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**사업자등록증을 보유시 신청가능**  
\*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 이후 본사로 통폐합되어 폐업되는 경우 선정 취소
- (2) 신청요건 : 아래의 신청요건 및 증빙첨부
- (3) 본사와 중복신청 불가 (중복신청 확인시 선정심사대상 제외)

| 구분      | 신청 요건(모든항목 충족)  | 증빙  |
|---------|---|---|
| 지사(지점)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지사(지점)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</li> <li>② IP나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현물 투입 인력의 주 근무지가 지사(지점)인 경우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업자등록증과 연계된 해당 인력의 <b>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/b></li> <li>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</li> <li>③ 지사(지점) 사업자등록증</li> </ol> |
| 기업부설연구소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업부설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</li> <li>② IP나래 프로그램을 실제 수행하면서 현물 투입하는 인력이 해당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</li> </ol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</li> <li>②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</li> <li>③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참고2

## 통합신청서 작성요령

### 기업현황

#### ※ 신청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입력

- (1) 기업정보 최신화 : 기업명 및 기업유형(법인 또는 개인), 기업소재지는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**사업관리시스템의 기업정보 업데이트 필수**  
※ pms.ripc.org → 로그인 → 회원관리 → 기업정보관리 → 수정  
\* 기업정보관리 내 담당자 정보 IP나래 수행 전담자 정보로 수정 필요
- (2) 기업유형 :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,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선택
- (3) 중소기업구분 : 중·소기업 범위 확인은 “중소기업기본법” 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 을 준용하여 기재 예)중기업,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
- (4) 총 임직원수 : 신청당시 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” 기준으로 작성
- (5)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: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
- (6) 대표자 : 대표자 전부를 기재
- (7) 소재지 :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,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(등본상의 주소와 실체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)
- (8) 주생산품 : 해당기업의 주력생산품 기입(복수입력 가능)
- (9) KSIC 코드 :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 표를 기준으로 기재
- (10) 설립일자 :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,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(예: 2021. 7. 6)

- (11)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 :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해당 체크
- (12) 공고문 상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기재
- (13)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: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 
 \* IP디딤돌 수혜이력 기업의 경우 반드시 기재(가점부여)

**일반현황**

- (1) 매출액 :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(재무제표 기준)
- (2) 고용인원 :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

**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**

- (1) 출원건수 :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 
 (예 :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가 20건이고 그중에 10건이 등록되었더라도 20건 입력)
- (2) 등록건수 : 창업 후 현재까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
- (3) 지식재산 활용여부
  - 자사실시 :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/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
  - 양도(라이선스 out) :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.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
  - 매입(라이선스 in) :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.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은 건수 기재

**지식재산 경영 인프라**

- (1) IP(지식재산)인력 :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
- (2) IP(지식재산)인력 현황 :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

<IP(지식재산)인력의 개념>

- 전담인력 :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
- 겸임인력 :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

- (3)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보유 여부 :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
- (4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여부 :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
- (5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: 인정받은 연구소는 인정번호를 기재

### 참고3

### 제출서류 등록 참고사항

- ※ 첨부파일 중 사본은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
- ※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에 한해 인정

#### 필수 첨부파일 등록

- (1) 사업자등록증 사본 :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
\*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시 지사(지점)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
- (2)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: 법인기업에 해당(법인기업은 필수 제출)
- (3) 중소기업구분 입증서류 : 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 확인 필수)

[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] ※ 중·소기업 범위 확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을 준용  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mss.go.kr/>) → 중소기업범위  
→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 → 회원가입 →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

- (4) 창업기업확인서

[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] 창업기업확인시스템(<https://cert.k-startup.go.kr>)  
→ 창업기업 자가진단 → 회원가입 → 창업기업확인서발급신청

\*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

- (5) 사업추진(활용) 계획서 :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
\*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
- (6) 간이 KIT : 간이키트 작성

#### 선택 첨부파일 등록

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

- (1) 재무제표 : 최근 3년간(또는 직전년도) 사본
- (2)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
- (3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

#### 가점증빙 서류 등록

- (1) 장애인기업 인증서 사본
- (2)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: 신분증 불가
- (3) 청년 창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: 주민번호 뒤 7자리 제외하여 첨부
- (4)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
- (5)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사본
- (6) 지역특화(주력산업) : 온라인신청서 작성시 기재
- (7) IP디딤돌 수혜기업 :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재